



제429회 국회 (정기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법관발부 영장집행 거부 시 교도관에게 강제력 행사 권한 부여〉
■ 민형배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2029호)

2025. 9.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정 환 철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민형배의원 등 10인
2. 발 의 일: 2025. 8. 7.
3. 회 부 일: 2025. 8. 8.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영장에 따른 직무집행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 교도관이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현재 교정시설 내에서 교도관이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유는 도주, 자해, 시설 손괴, 타인 위해 등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구속 피의자가 법원의 영장 집행을 거부해 조사실 이송 등이 불가능할 경우에도 강제력을 행사할 수 없어, 수사가 지연되거나 무력화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혐의 등으로 구속된 상태에서 법원의 체포영장 집행에 불응하며 조사실 이송을 거부한 사례는 이러한 제도적 공백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건입니다.

이에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른 직무집행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를 교도관의 강제력 행사 사유에 추가하고자 합니다. 구속 상태에서의 영장 집행 거부로 인한 수사 지연을 방지하고, 범죄 수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입니다(안 제100조제1항제8호 신설).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교도관이 수용자에게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유에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른 직무집행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때”를 추가함(안 제100조제1항제8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0조(강제력의 행사) ① 교도관은 수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다. 1. ~ 7. (생략) <u><신설></u> ② ~ ⑦ (생략)	제100조(강제력의 행사) ① ----- ----- ----- -----. 1. ~ 7. (현행과 같음) 8. <u>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른</u> <u>직무집행을 정당한 사유 없이</u> <u>거부하는 때</u> ② ~ ⑦ (현행과 같음)

현행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 제100조제1항은 수용자가 도주·자해하거나 하려고 하는 때, 자살하려고 하는 때,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끼치려고 하는 때 등에 있어 교도관은 수용자에게 필요최소한으로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해당 규정에 따라 강제력을 행사하는 경우 교도봉·가스분사기·

가스총·최루탄 등의 보안장비를 사용할 수 있고, 강제력 행사 시 사전에 상대방에게 이를 경고하여야 함.

한편,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있는 구속된 피고인을 체포하여 조사실로 이송하고자 하는 경우, 체포영장의 집행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교도관이 집행하게 됨.¹⁾

현행 「형집행법」²⁾에 따라 교도관이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유

- 1) 「형사소송법」 제81조(구속영장의 집행) ① 구속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한다. 단,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재판장,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가 그 집행을 지휘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법원사무관등에게 그 집행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법원사무관등은 그 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사법경찰관리·교도관 또는 법원경위에게 보조를 요구할 수 있으며 관할구역 외에서도 집행할 수 있다.
③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있는 피고인에 대하여 발부된 구속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교도관이 집행한다.

제200조의6(준용규정) 제75조, 제81조제1항 본문 및 제3항, 제82조, 제83조, 제85조제1항·제3항 및 제4항, 제86조, 제87조, 제89조부터 제91조까지, 제93조, 제101조제4항 및 제102조제2항 단서의 규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구속”은 이를 “체포”로, “구속영장”은 이를 “체포영장”으로 본다.

- 2)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0조(강제력의 행사) ① 교도관은 수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다.
1. 도주하거나 도주하려고 하는 때
 2. 자살하려고 하는 때
 3. 자해하거나 자해하려고 하는 때
 4.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끼치려고 하는 때
 5. 위력으로 교도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때
 6. 교정시설의 설비·기구 등을 손괴하거나 손괴하려고 하는 때
 7.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크게 해치는 행위를 하거나 하려고 하는 때
- ② 교도관은 수용자 외의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다.
1. 수용자를 도주하게 하려고 하는 때
 2. 교도관 또는 수용자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끼치려고 하는 때
 3. 위력으로 교도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때
 4. 교정시설의 설비·기구 등을 손괴하거나 하려고 하는 때
 5. 교정시설에 침입하거나 하려고 하는 때
 6. 교정시설의 안(교도관이 교정시설의 밖에서 수용자를 계호하고 있는 경우 그 장소를 포함한다)에서 교도관의 퇴거요구를 받고도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때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강제력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보안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④ 제3항에서 “보안장비”란 교도봉·가스분사기·가스총·최루탄 등 사람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도주의 방지 및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교도관이 사용하는 장비와 기구를 말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강제력을 행사하려면 사전에 상대방에게 이를 경고하여야 한다. 다만, 상황이 급박하여 경고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강제력의 행사는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⑦ 보안장비의 종류, 종류별 사용요건 및 사용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는 도주, 자해, 자살, 다른 사람에 대한 위해, 위력으로 교도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경우 등임.

따라서, “구속된 피의자가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 등의 집행을 거부해 조사실 이송이 불가능한 경우”는 해당 조항이 열거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이에 근거한 유형력 행사는 한계가 있음.

이에 개정안은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른 직무집행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를 교도관의 강제력 행사 사유에 추가하여, 구속 상태에 있는 수용자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로 인한 수사 지연 방지 등 범죄 수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교정시설 내 안전·질서를 확립하며, 교도관의 직무수행 기준을 명확히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입법취지가 인정됨.

다만, 개정안의 심사과정에서 교도관의 강제력 행사는 필요최소한도로 행해져야 한다는 현행법³⁾의 취지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은 교도관의 강제력 행사 가능 사유로 도주, 자해, 자살, 다른 사람에 대한 위해를 하거나 하려고 하는 때 등 수용자의 적극적인 작위를 전제로 하고 있는 데 반해, 개정안에 따른 영장집행 거부는 명시적 행위를 전제로 하지 않고도 성립할 수 있는 것인바, 단순 부작위 등 거부행위의 다양한 형태와 관련하여 집행 과정상 혼선이

3)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0조(강제력의 행사) ⑥ 강제력의 행사는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발생할 우려도 존재함.

따라서 교도관의 정당한 직무상 지시에 불응하거나 저항하는 경우 등 수용자의 거부 의사에 명백한 경우를 전제할 필요성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또한, 이와 유사한 취지에서,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른 직무집행”은 다소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법관이 발부한 영장과 관련한 모든 직무집행 상황이 이에 해당할 수 있는바, 수용자를 인치·유치하거나 이송·출정 등을 위하여 수용자를 호송하려는 경우 등 강제력 행사 요건을 보다 구체화하여 집행과정 상의 명확성을 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추가적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한편, 개정안과 유사한 취지에서 체포·구속된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형사소송법」 제200조⁴⁾의 출석요구를 거부하는 경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에게 체포·구속된 피의자의 인치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⁵⁾과 검사의 지휘로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기관에 교도관을 추가하려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⁶⁾이 각각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음.

참고로, 법무부는 강제력 행사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입법취지에 적극 공감하는 입장이나, 직접적인 영장집행 업무 이외에도 강제력

4) 「형사소송법」 제200조(피의자의 출석요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5) 전용기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111951호, 발의일: 2025. 8. 4.

6) 박희승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7984호, 발의일: 2025. 2. 7.

이 필요한 경우가 있는바, 영장집행 상황을 포함하여 수용자의 외부 호송, 거실 이동 등 교정 실무상 발생하는 다양한 상황을 보다 포괄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053